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5.

발 의 자 : 위성곤 · 임호선 · 김종민
정태호 · 김원이 · 김승원
장득구 · 이춘석 · 정을호
채현일 · 장철민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폭염, 홍수, 한파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·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, 국가 정책 수립 시 기후위기를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삼는 ‘기후위기 적응 주류화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수산업의 구체적인 피해양상 등 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, 이는 곧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
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) ① (생 략)	제6조(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.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</u> <u>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</u> <u>관한 사항</u>
<u>6. ~ 9.</u> (생 략)	<u>7. ~ 10.</u> (현행 제6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